KCMI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연구원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범위 등 구체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9 개정 · 2022/3/10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의 특례 근거를 마련하며,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

2) 주요 내용

□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범위 등 구체화(제19조의3 신설)

— 투자매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추가등록을 할 수 있는 업무 단위의 범위를 투자매매업, 인수업을 제외한 투자매매업, 인수업만 하는 투자매매업으로 함

• 각각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와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로 정함

— 투자매매업자 등이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절차 및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인가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관련(제19조의4 신설)

— 금융투자업인가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법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 총수를 전부 소유하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

• 특례가 적용되는 조직형태의 변경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 영업소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국내 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완화되는 인가요건의 범위를 금융투자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과 금융투자업 수행을 위한 인력 · 설비에 관한 요건 등으로 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증권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과 지급 보류의 방법 · 절차 마련(제73조, 제73조의2 신설)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치 · 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예치 · 신탁된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등이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 지급보류 금액, 지급보류 사유, 지급보류 기간,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인가요건 구체화(제348조 제5항 신설)

—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 중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요건으로 정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재무상태는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금융기관 등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따르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등)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등)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1/12/9 개정 · 시행)[1)]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완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스팩 관련 조문 명확화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명확화 된 외화예탁금 의무예치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제2-3조, 제2-3조의2, 제2-9조의2, 제4-105조의2, 제7-41조의3, 제8-85조의2)

— 소송 · 조사 · 검사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중단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 판단

□ 업무단위 추가등록 관련 개정(제2-2조, 제2-5조)

— 인가받은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업무 추가 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 투자자예탁금 지급절차 · 방법 개선(제4-38조 제3항, 제4-39조의2, 제4-39조의3, 제4-39조의4)

—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규정

---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제4-39조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9일,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다목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제4-102조의6 제2항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문인력 경력요건 관련 경력기간 완화(별표 2)

— 전문인력 경력요건을 현행 실무경력자 5년, 전문자격 보유자 3년 이상에서 실무경력자 4년, 전문자격 보유자 2년 이상으로 완화

□ 인가 자진폐지 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별표 3)

—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자진폐지 후 재진입 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

□ 스팩 합병 시 예치금 반환 관련(제1-4조의2 제5항 2호 다목)

—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 예치금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하나, 스팩소멸 합병으로 스팩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예치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는바 관련 내용 명확화

□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 유예(제4-3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달러 외 외화 예수금을 기타 예치기관에 예치 · 신탁할 수 있도록 함

•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이종통화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고려

□ 일부 예수금의 외국환은행 예치(제4-39조 제1항 제4호 나목)

—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달러화 예수금 최대 30%를 외국환은행에 예치 할 수 있음

□ 증권금융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 추가(제4-40조)

— 증권금융의 외화 별도예치금 운용수단과 관련하여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미 국채 매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추가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 등 후속조치(제4-1조 제2항)

— 겸영업무로 벤처대출 허용, 중견기업 대출 건전성 부담 완화, 기업 금융관련 자산 범위 합리화

• 기업금융관련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SPC 및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 대출채권은 제외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1/12/9 개정 · 시행)[2)]

1) 개정 이유

□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의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포함)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기존 스팩(SPAC) 합병시 스팩의 법인격 존속(합병대상 기업 법인격 소멸)을 전제로 마련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스팩 소멸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제2-3조 제5항)

— 파생결합증권(ETN) 모집 · 매출실적이 있는 자가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

- (기존) 15일 → (개정) 3일

— 증권의 발행인 및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스팩 소멸 합병 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조문 정비(제2-2조, 제2-6조, 제2-19조 및 제5-13조)

— (기존) 스팩과 비상장사 등간의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하고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주체 등을 기술

— (개정) 합병 이후에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전매기준(제2-2조), 보호예수증명(제2-6조 및 제2-19조), 합병가액산정 특례(제5-13조) 관련 조문을 정비 · 명확화

- 거래소 상장규정도 그간 스팩존속 합병만을 허용해 왔으나, 최근 규정개정을 통해 스팩 소멸방식 허용(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등의 법인격이 존속)

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1/12/24 개정 · 2022/1/1 시행)

1) 개정 이유

□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021.12.)에 앞서 2020년 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8항 제1호 아목, 제2-19조 제3항 제8호, 제5-13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제3조의3, 제23조의3)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계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정보주체 조회 · 분석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23조의3)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신규상장 신청 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등)
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 단축 등)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항목 중 일부 기준 완화 등)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석유시장 자체 인센티브 마련)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특별운용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마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1/12/10 개정 · 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변경·추가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분산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규상장 신청 서류 제출방식 간소화(제12조 제3항 · 제4항)

— 모든 상장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장심사 시 참고 빈도가 높은 서류에 한하여 서면으로 접수

•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감사보고서

□ 변경 · 추가상장 서식 및 프로세스 개선(제18조 제1항 · 제3항 · 상장서식 13)

— 변경 · 추가상장 신청서식을 변경상장과 추가상장 사유별로 분리

— 실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각 서류별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조문 삭제 및 제출대상 서류 간소화

□ 분산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제27조 제2항 · 제6항 · 제10항)

— 분산요건 미달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혹은 해당 사유의 해소 확인 시 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마련 및 필요서류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1/12/10 개정 · 2021/12/13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하여 불성실공시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 단축(제12조 제4항)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 공표기간을 부과벌점에 따라 차등화

- 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1주일간(단, 2점 이하는 미표시)
- 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2주일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1개월간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감경사유 추가(별표 1 제3호)

—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 참여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벌점 1점 감경

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1/12/15 개정 · 2021/12/27 시행)

1) 개정 이유

□ 투자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시장변화에 따라 시장경보제도의 정합성 및 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자 소액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항목 폐지(제3조 제2항)

— 투자주의종목 유형 중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의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관련 조문 삭제

□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항목 중 일부 기준 완화(제3조 제3항, 제3조 제4항 제6호)

— 투자주의종목 중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의 경우 시황급변 시(시장지수가 3일간 ±8% 이상 변동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완화

□ 소액포상금 한도 증액(제6조의3)

— 소액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2021/12/20 개정 · 2022/1/3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함

2) 주요 내용

□ KRX석유시장 자체 인세티브 마련(제79조)

—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가 KRX석유시장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2021/12/27 개정 · 2021/12/28 시행)

1) 개정 이유

□ 증거금 현금에 대한 특별운용 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과실의 회원별 안분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특별운용 시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분리운용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 증거금 현금 관리부서에서 특별운용 금액 결정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한도 내에서 회원 자기재산 운용 금액 및 위탁재산 운용 금액을 결정

— 특별운용부서에서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을 구분하여 예치운용 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 받는 예치조건에 회원 자기재산과 위탁재산 간 구분 표기 여부를 포함

□ 운용과실의 회원별 안분방법 명확화(제11조, 제12조)

— 단위 운용상품마다 발생한 과실을 해당 운용기간 동안의 회원별적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실무에 부합하도록 안분방법 기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대리)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 변경 · 축소)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1/12/14 개정 · 2021/12/15 시행)

1) 개정 이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법인 전문투자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의 지정신청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 개선 및 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대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재단법인 및 비상장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 개선

- (대리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지행사원
- (제출서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외국법인의 법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대리

— 외국법인이 법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대리인이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 관련 서류 명확화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자로 하여금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 제7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 제1항 제5호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1/12/30 개정 · 2022/2/3 시행)

1) 개정 이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특례법에 따른 과세특례 제한에 있어, 기존 변경 제한의 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판매회사 변경 대상 확대하기 위함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2007.6.1~2009.12.31)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5.12.10) 결과를 감안하여, 해당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재산정, 적용 이전까지 과세자료 증빙 용이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펀드들의 판매회사 변경을 제한하였었음

—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사건번호) 2013두610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2) 주요 내용

□ 제40-1조 제7호의 변경대상 제외 집합투자기구(펀드) 변경 · 축소

— (변경대상 제외) 모든 과세특례(2007.6.1~2009.12.31) 집합투자기구(펀드) → 손실상계 차감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펀드)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